# 2022년도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4. 5.(화요일), 11:0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헌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홍지만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3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Ⅱ.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4건(안건번호 제2022-16728호~1701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16728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16729호~16751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3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00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2-9607호~10611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 총 1,005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2-3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C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2.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7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1672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해당 블로그는 심의일 현재 OSP의 접근제한조치가 취해진 상태인데, 해당 접근제한조치의 경우 영구적이지 않으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내부 규정에 의해 제한이 해제될 수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다른 사람이 직접 접근제한 요청을 한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우리 원의 시정권고가 누적되거나 자체적으로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 OSP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해당 내부 규정 및 접근제한 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음.

- A 위원: 일시적 제한조치로 생각됨.

- 오진해 전문위원: 이러한 일시적 접근제한 조치의 경우 아예 탈퇴해서 계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1672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672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16729호~1675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해당 기기는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VOD서비스도 합법 서비스의 회원가입 없이 가능한 것인가? 예전에 시연하였던 대상 기기와는 작동 방식이 다로 다른 것으로 생각됨.

- 오진해 전문위원: 기기를 구매한 다음 특정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를 모두 불법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확인하고 있음.

- A 위원: 앱만 팔면 크래킹이 일어나 수익을 올릴 수 없으므로, 기계를 통해 앱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리뷰를 보니 우리나라 방송을 볼 수 있지만 화질은 좋지 않다고 나옴. 그러나 VOD의 경우는 고화질로 파악됨.

- B 위원: 구매자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낮음.

- E 위원: 이런 기기 자체는 만들기 어렵지 않은데, 앱을 통해 VOD를 이용하게 하려면 별도의 대용량 서버가 있어야 함.

- 오진해 전문위원: 현지에서 해당 서버를 마련해 운영하고, 앱을 통해 그 서버에 접속 하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기기 판매글을 시정권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나, 보호원과 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됨.

- A 위원: 일제 단속 및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16729호~1675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6729호~1675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16752호~17011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중점](영화)리디밍 러브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16928호 '[중점](영화)리디밍 러브 (2022)'은 2021. 11. 12.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260포인트에 판매 중임.
('[중점](영화)나이트메어 앨리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16929호 '[중점](영화)나이트메어 앨리 (2020)'은 2022. 2. 23.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185포인트에 판매 중임.
('[중점](방송)원피스(1999)'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16953호 '[중점](방송)원피스(1999)'은 1999. 10. 20.부터 방영중인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웹하드에서 1,97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335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16752호~1701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6752호~1701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16728호, 제2022-16729호~16751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6752호~1701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9607호~10611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12.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